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3. 16 선고 2021가단849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아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나미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정용하, 박수찬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3.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0. 4. 3.자 1억 7,0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0. 4. 3.자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억 7,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9. 6. 19. E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 3층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3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원고가 E에게 지급하였고, C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8,95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3.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0727). 그 법원은 2020. 10. 16. 위 차용증을 근거로 'C은 원고에게 2억 8,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위 소가 제기된 직후인 2020. 3. 12. H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3.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H은 2020.

4. 3. C의 요구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이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실제 발생원인은 원고와 C 간의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C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는 없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 간에 위 주장과 같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이체행위를 통해 C과 피고 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과 피고 간에 그와 같이 이체된 돈을 종국적으로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1억 7,000만 원에 관하여 C과 그 계좌 명의인인 피고 간에 C이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 돈이 C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고 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과 피고 간에 성립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을 1, 14~19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이 사건 이체행위를 통해 입금된 1억 7,000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채무자인 C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돈이 반환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없다.

가) C은 원고 등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친분이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통장 등을 건네받았다(당시 계좌 잔액은 32,540원이었다). C은 제3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 받았다.

나) 이 사건 계좌에서 2020. 4. 3.부터 2020. 4. 6.까지 1억 6,70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20. 4. 6. 다시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2020. 4. 9.까지 그 대부분이 다시 인출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20. 4. 3.부터 C의 카드이용대금 등이 결제되기 시작하였고, 2021. 3. 31.까지 그 결제를 위한 돈이 여러 번 입금되었다(2021. 3. 31. 계좌 잔액은 50,170원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이체행위가 있은 후 C이 지출한 카드이용대금, 변호사보수, 채무변제액 등은 상당히 고액이고, C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C은 이 사건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위 1억 7,000만 원을 모두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광민